

의안번호	제 193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341 회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5년 6월 2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6월 2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권 포기에 대한 규정 신설  
※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(국유특허권의 포기)
- 관리부서의 특허보유 필요성 및 수익성 등 검토를 위한  
도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“포기” 근거 마련

## 2. 주요내용

- 도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 근거 마련(안 제2조)
  - 특허권의 “포기” 조항 신설
-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특허권 포기방법 규정(안 제9조)
  - “특허권 포기”사항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항 신설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(안 제2조 등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1회계연도” 를 “한 회계연도” 로 한다.

라. 도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

제3조 중 “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” 를 “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발명자간” 을 “발명자 간” 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지체없이” 를 “지체 없이” 로 한다.

제6조 중 “때에는” 을 “경우에는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그 처분수입금” 을 “처분수입금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이를 유상으로” 를 “유상으로” 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3호 중 “제2조의제3호가목” 을 “제2조의제3호가목 및 라목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1 ~ 2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3. “처분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가 ~ 다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4. “처분수입금”이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<u>1회계연도</u>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발명의 신고)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<u>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</u> 의하여 발명내용을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권리의 승계) ① (생략)</p> <p>② 발명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도는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하며, 다른 자치단체 공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1 ~ 2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3.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                      가 ~ 다 (현행과 같음)  <u>라. 도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</u></p> <p>4.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한 회계연도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제3조(발명의 신고)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제4조(권리의 승계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발명자 간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무원과 공유일 경우에는 <u>발명자</u> 간의 협의결과에 따른 지분을 승계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5조(출원 및 등록)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<u>지체없이</u>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보상금의 지급)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<u>발명자에게</u>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8조(처분보상금)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<u>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30</u>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<u>이를 유상으로</u>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출원 및 등록) ----- ----- <u>지체 없이</u> ----- -----.</p> <p>제6조(보상금의 지급) ① ----- ----- <u>경우에는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처분보상금)① ----- ----- -----<u>처분수입금</u>----- -----② ----- ----- -----<u>유상으로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9조(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1. ~ 2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2 (생략)</p> <p>3. <u>제2조제3호가목</u>에 관한 사항</p>	<p>3. <u>제2조의제3호가목 및 라목</u>-- -----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발명진흥법

#### 제10조 (직무발명) ① ~ ③ (생략)

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(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)는 「국유재산법」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,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

제9조의2(국유특허권의 포기) 특허청장이 「발명진흥법」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유특허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, 국유특허권 실시 이력, 기술평가 결과 및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